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적극 적용 기대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규조문 비교

종 전	개 정
<p>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p> <p>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격년 단위로 12월 31일 까지 차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바로 전 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 4. 지역건설산업자 및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이외에 최근 2년간 시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결과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①~⑤ (종전과 동일)</p> <p>⑥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정성적·정량적 추진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p> <p>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p>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하여야 한다.</p>